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등을 중개하는 기존의 외국환중개업과 달리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등을 중개하는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을 도입함(안 제9조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는 것 외에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 일반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을 일부 추가하고, 대고객외국환중개업에 대하여는 이에 더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II. 검토의견

1. 다른 법률 준용규정의 정비(안 제9조제6항)

(1) 안 제9조제6항은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도,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위 두 법률의 투자자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① ‘일반외국환중개업’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4조, 제54조, 제55조¹⁾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고, ②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경우 전문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외국환중개업의 경우와 동일한 규정을 준용하되, 전문금융기관 등 외의 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준용에 더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²⁾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으로 준용 법률을 정하도록 한 입법형식은 외국환중개업무에 준용하는 ‘법률’을 국회 의결 없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인바, 이는 ‘헌법-법률-명령’ 등으로 이어지는 우리 법질서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봄.

또한,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용규정은 반대로 외국환중개회사에게는 ‘규제’나 ‘의무’로 작용한다고 할 것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제38조(상호), 제39조(명의대여의 금지),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제17조(적합성원칙), 제19조(설명의무),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24조(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금지),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바, 이러한 규제·의무 등의 적용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존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관련 사업자 등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임.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추후 상황에 따라 외환당국과 금융당국이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의 개정만으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준용규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만일 준용규정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³⁾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7조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2) 한편, 다른 법률의 ‘의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벌칙이나 과태료 및 과징금 등 규정까지 함께 준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벌칙 규정과 관련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⁵⁾ 따라서 해석상의 논란을 피하고 명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벌칙·과태료·과징금 등의 준용 여부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개정안은 다른 법률의 투자자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의무규정을 다수 준용하면서도 해당 규정 위반에 따르는 벌칙·과태료·과징금 규정 등의 준용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손해배상책임),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5)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판결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하고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규정 등은 추가하는 한편, 의무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과태료·과징금 관련 규정 등까지 함께 준용하고, 기타 불필요한 준용규정은 정리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안 제9조제6항에 대한 수정의견]

[illegible]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1. 일반외국환중개업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4조, 제54조, 제55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2.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 가. 전문금융기관등과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 나. 전문금융기관등 외의 자와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1. ----- ----- 제37조, 제38조제1항(이 경우 “금융투자”는 “외국환중개”로 본다), 제39조, ----- 제55조, 제71조, 제428조제4항,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 제444조제6호의2·제8호, 제445조제3호·제9호·제10호, 제446조제3호(이 경우 “금융투자”는 “외국환중개”로 본다), 제447조제2항 및 제449조제1항(제29호 중 제71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제4항 2. ----- ----- 가. ----- ----- ----- 나.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자와 -----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u>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u>	----- ----- -----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57조(제3항은 제외하며,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본다)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2호에 한정한다)·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제5항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⑦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사항에 따른 인가취소 규정 및 과태료 규정 등 정비

(안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

(1) 현행 제9조제4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지정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12조제1항제6호6)에 따라 인가를 취소

6)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제한 또는 업무의 전부·일부 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개정안 제9조제4항7)은 이에 더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현행 보증금 예탁 명령 외에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경우 위 제12조제1항제6호를 함께 개정하여 보증금 예탁 명령 외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외국환중개회사에게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개정안은 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고 있음.

(2) 한편, 현행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 등으로 한정되며, 이를 위반하여 ‘거래’하는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현행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현행 제32조제1항제2호8)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9조제4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 ③ (생략)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 ③ (생략) ④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 ⑤ ~ ⑦ (생략)

8) 「외국환거래법」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9조제2항⁹⁾은 현행 규정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를 상대로만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수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개정안의 ‘외국환중개업무’¹⁰⁾에는 외국환 관련 중개 등 ‘거래’ 외에 이와 ‘관련된 업무’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현행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를 함께 개정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안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 외의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개정안은 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개정안에 따라 현행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까지를 함께 개정하는 수정의견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9) [제9조제2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u>거래</u> 의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③ ~ ⑦ (생략)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u>업종별로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를 상대로만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여야 한다.</u> ③ ~ ⑦ (생략)

- 10) **안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의2. “외국환중개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업무

[안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 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 소를 포함한다)의 업무 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할 수 있다. 1. ~ 5. (생략) 5의2. ~ 5의4. (생략) 6. 제9조제2항을 위반 하여 <u>거래한</u> 경우 또 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u>명</u> <u>령을</u>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 14. (생략) ② ~ ⑤ (생략)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 ----- ----- ----- -----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 5의4. (현행 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 1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 ----- ----- ----- ----- ----- ----- ----- ----- ----- ----- ----- ----- ----- ----- 1. ~ 5. (개정안과 같음) 5의2. ~ 5의4. (개정 안과 같음) 6. ----- --- <u>외국환중개업무</u> <u>를 한</u> ----- ----- <u>등</u> <u>필요한 조치를</u> ---- ----- 7. ~ 14. (개정안과 같음)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다만, 제29조에	제32조(과태료) ① ----- ----- ----- ----- ----- -----	제32조(과태료) ① ----- ----- ----- ----- -----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u>거</u> <u>대한</u> 자	2. (현행과 같음)	2. ----- ----- ----- ----- ----- <u>외국</u> <u>환중개업무를 한</u>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3. ~ 6. (개정안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